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2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오세희 · 김남희 · 이훈기
김우영 · 위성곤 · 서영교
전진숙 · 허성무 · 이주희
이용우 · 김원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 · 기간 ·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 · 징수한다.	⑤ ----- ----- <u>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 · 기간 ·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